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 . . . (제 회)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총리 (인사혁신처 소관)
제출 연월일	20 .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저연차·실무직 공무원 중심의 처우개선을 위해 근무연수 4년 미만 공무원의 정근수당을 인상하고, 9급(상당) 공무원의 시간외근무수당 감액조정률을 상향하여 시간외근무수당 지급단가를 인상하며, 직무와 보상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중요직무급 지급대상 및 지급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자녀에 대한 가족수당을 인상하고, 군인, 경찰·소방, 교육, 민원담당 등 각 분야 행정 현장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수당 신설·조정을 통해 사기를 진작하는 등 현행 공무원 수당제도의 운영상 나타나는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 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 중 “국립 교육기관·교육행정기관 및 교육연구기관 소속 교육공무원은 교육부령으로, 교육감이 맡아 주관하는 교육기관·교육행정기관 및 교육연구기관 소속 교육공무원과 「소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제1항 및 같은 조 제5항제1호·제3호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임용권을 행사하는 소방공무원(이하 “시·도소방공무원”이라 한다)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조례로”를 “「소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제1항 및 같은 조 제5항제1호·제3호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임용권을 행사하는 소방공무원(이하 “시·도소방공무원”이라 한다)은 행정안전부령으로, 국립 교육기관·교육행정기관 및 교육연구기관 소속 교육공무원은 교육부령으로, 교육감이 맡아 주관하는 교육기관·교육행정기관 및 교육연구기관 소속 교육공무원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조례로”로 한다.

제13조 본문 중 “지급한다”를 “지급하되, 위험도가 특별히 높은 경우에

는 위험근무수당 가산금을 지급할 수 있다”로 한다.

제14조의2제1항 본문 중 “「공무원 임용령」 제57조의4제1항,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30조의3제1항,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49조제1항, 「소방공무원 임용령」 제30조의4제1항, 「군인사법 시행령」 제53조의2제1항,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38조의2제1항”을 “「공무원 임용령」 제57조의4제3항,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30조의3제2항,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49조제2항, 「소방공무원 임용령」 제30조의4제2항, 「군인사법 시행령」 제53조의2제3항,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38조의2제3항”으로, “육아휴직”을 “육아휴직, 재난이나 재해에 대응하기 위한 출장 또는 파견 중인 공무원”으로, “유산휴가 및 사산휴가의 경우에는 30일 이상 병가 또는 휴가를 사용하는 공무원”을 “유산휴가, 사산휴가 및 재난이나 재해에 대응하기 위한 출장 또는 파견의 경우에는 30일 이상 병가 또는 휴가를 사용하거나 출장 또는 파견되는 공무원”으로 한다.

제15조제2항 중 “4배 및 10배”를 “3배 및 7배”로, “55퍼센트를”을 “55퍼센트,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 별표3의2, 별표 4, 별표 8, 별표 10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중 9급 또는 9급 상당 계급의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기준호봉 봉급액의 60퍼센트, 「공무원보수규정」 별표13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중 하사 및 소위의 경우에는 60퍼센트를”로 한다.

제19조제3항제18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15년을 초과

하여”를 “군인인 항공기 조종사 및 동승근무자가 비행임무를 목적으로 국외파견(「군인 및 군무원의 해외파견근무수당 지급규정」 제2조에 따른 해외파견근무수당 지급대상자는 제외한다) 또는 국외출장을 한 경우에는 별표 11 제3호 나목의 2), 3)의 수당을 지급하고, 15년을 초과하여”로 한다.

18. 별표11 제3호바목23)의 수당과 별표 11 제1호(기술정보수당)의 수당 및 별표 11 제3호사목(중요직무급)의 수당
별표 2 제1호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근무연수	지 급 액	근무연수	지 급 액
2년 미만	월봉급액의 10% 해당 금액	8년 미만	월봉급액의 35% 해당 금액
5년 미만	월봉급액의 20% 해당 금액	9년 미만	월봉급액의 40% 해당 금액
6년 미만	월봉급액의 25% 해당 금액	10년 미만	월봉급액의 45% 해당 금액
7년 미만	월봉급액의 30% 해당 금액	10년 이상	월봉급액의 50% 해당 금액

별표 5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적용범위	부양가족	월 지급액	비고	
1. 국가공무원 (재외공무원 은 제외한다)	배우자	40,000원		
	배우자 및 자녀를 제외한 부양 가족 1명당	20,000원		
	자녀	첫째자녀		50,000원
		둘째자녀		80,000원
	셋째 이후 자녀	120,000원		

별표 6 비고 제1호 본문 중 “미비한 국가에”를 “미비한 국가 및 전쟁 또는 내전 등으로 교육이 불가능한 국가에”로 한다.

별표 9에 비고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비고 : 위험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월 1만원의 가산금을 추가하여 지급할 수 있다.

- 1) 제1호 갑종란의 나목
- 2) 제5호 갑종란
- 3) 제6호 갑종란의 가, 나, 라목

별표 10 갑종의 지급대상란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동력패러글라이더 운용을 위해 특수전문교육을 실시하는 교관
및 동력패러글라이더 비행을 주임무로 하는 사람

별표 11 제2호다목6)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 중 “월 30,000원”을 “월 40,000원”으로 하고, 8)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 중 가)의 “월 30,000원”을 “월 40,000원”으로 하며 9) 및 10)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 중 “월 20,000원”을 “월 30,000원”으로 한다.

별표 11 제3호바목3)의 나) 가산금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나) 지급방법”을 “다) 지급방법”으로 한다.

나) 가산금

소속장관은 민원의 종류와 특성 등을 고려하여 지급대상자의
30% 범위에서 월30,000원을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별표 11 제3호바목8)의 가) 중 “30,000원”을 “40,000원”으로 하고, 나) 중 “20,000원”을 “30,000원”으로 한다

별표 11 제3호바목22)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의 나) 가산금 중 “50,000원”을 “70,000원”으로 한다.

별표 11 제3호사목의 지급대상 중 “21퍼센트”를 “24퍼센트”로 하고, 지

급액 및 지급방법란 중 가) 지급상한액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지급대상	월 지급 상한액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300,000원
3급(상당) 또는 4급(상당) 공무원(과장급)	200,000원
4급(상당) 또는 5급(상당) 공무원	150,000원
6급(상당) 이하 공무원	100,000원

별표 11 제4호가목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 중 1)의 가) 달러 지급국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월지급액, 단위: 미합중국달러)

계급· 직무등급	구분										
	가 지역	나 지역	다 지역	라 지역	마 지역	바 지역	사 지역	아 지역	자 지역	차 지역	
14등급	4,102	4,339	4,510	4,701	4,928	5,162	5,343	5,533	5,723	5,960	
1급,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12·13등급, 소장·준장	3,544	3,746	3,883	4,046	4,237	4,440	4,591	4,754	4,916	5,120	
2·3급, 고위공무원단 나등급, 9등급부터 11등급까지 대령중령 국가정보원 전문관 (2·3급 상당 직위)	3,031	3,201	3,304	3,442	3,600	3,771	3,896	4,033	4,170	4,341	
4급, 6등급부터 8등급 까지 소령 국가정보원 전문관(4급 상당 직위)	2,665	2,813	2,893	3,011	3,147	3,294	3,403	3,520	3,641	3,787	
5급, 5등급, 대위, 국가정보원 전문관	2,463	2,598	2,666	2,774	2,899	3,033	3,131	3,240	3,350	3,484	
6급, 4등급	2,261	2,384	2,440	2,539	2,650	2,772	2,861	2,959	3,058	3,181	
7급, 3등급	2,097	2,208	2,254	2,345	2,446	2,558	2,638	2,730	2,819	2,932	

별표 11 제4호가목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 중 1)의 나) 현지화 지급국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월지급액)

구분	싱가포르, 브루나이	일본, 요코하마	고베, 나고야, 니가타, 삿포로, 센다이, 오사카,	영국 (파운드)	폴란드, 슬로바키아, 체코, 헝가리, 루마니아,

계급· 직무등급	(싱가포르 달러)	(엔)	후쿠오카, 히로시마 (엔)		불가리아, 세르비아, 라트비아 (유로)
14등급	7,177	665,697	608,550	3,715	3,991
1급,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12·13등급, 소장·준장	6,136	567,447	520,213	3,232	3,406
23급, 고위공무원단 나등급, 9등급부터 11등급까지 대형중령 국가정보원 전문관 (23급 상당 직위)	5,054	466,263	428,483	2,738	2,801
4급 6등급부터 8등급 까지 소령 국가정보원 전문관(4급 상당 직위)	4,385	405,260	371,729	2,428	2,438
5급, 5등급, 대위, 국가정보원 전문관	4,016	369,611	340,516	2,257	2,226
6급, 4등급	3,648	337,279	309,302	2,087	2,032
7급, 3등급	3,347	307,572	283,763	1,948	1,856

계급· 직무등급	구분	스페인, 라스팔마스, 그리스, 포르투갈, 크로아티아 (유로)	터키, 이스탄불 (유로)	아일랜드, 오스트리아, 프랑크푸르트, 교황청, 벨기에, 이탈리아, 밀라노, 독일, 본, 함부르크, 프랑스, 오이시디, 네덜란드, 유네스코 (유로)	핀란드 (유로)	덴마크 (크로네)
14등급		4,535	4,690	4,718	4,899	37,775
1급,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12·13등급, 소장·준장		3,869	4,000	4,022	4,178	32,201
23급, 고위공무원단 나등급, 9등급부터 11등급까지 대형중령 국가정보원 전문관 (23급 상당 직위)		3,180	3,333	3,307	3,433	26,466
4급 6등급부터 8등급 까지 소령 국가정보원 전문관(4급 상당 직위)		2,766	2,898	2,877	2,985	23,086
5급, 5등급, 대위, 국가정보원 전문관		2,524	2,646	2,624	2,724	20,998
6급, 4등급		2,307	2,416	2,397	2,487	19,166
7급, 3등급		2,103	2,202	2,185	2,266	17,473

계급· 직무등급	구분	노르웨이 (크로네)	스웨덴 (크로나)	스위스, 제네바 (프랑)	캐나다, 밴쿠버, 몬트리올, 토론토 (달러)	호주, 시드니, 멜번 (달러)	뉴질랜드, 오클랜드 (달러)
14등급		45,565	46,626	8,463	6,110	6,602	8,855
1급,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12·13등급, 소장·준장		38,841	39,745	7,215	5,214	5,631	7,555
2·3급, 고위공무원단 나등급, 9등급부터 11등급까지 대령중령 국가정보원 전문관 (2·3급 상당 직위)		31,906	32,673	5,927	4,288	4,693	6,212
4급 6등급부터 8등급 까지 소령 국가정보원 전문관(4급 상당 직위)		27,745	28,402	5,154	3,731	4,084	5,407
5급, 5등급, 대위, 국가정보원 전문관		25,295	25,928	4,698	3,405	3,729	4,935
6급, 4등급		23,083	23,666	4,287	3,107	3,405	4,507
7급, 3등급		21,055	21,568	3,911	2,837	3,105	4,111

계급· 직무등급	구분	대만 (달러)	시안, 광저우, 선양, 청두, 칭다오, 우한, 다롄 (런민비)	중국, 상하이 (런민비)
14등급		174,955	32,168	33,593
1급,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12·13등급, 소장·준장		149,137	27,500	28,716
2·3급, 고위공무원단 나등급, 9등급부터 11등급까지 대령중령 국가정보원 전문관 (2·3급 상당 직위)		122,516	22,957	23,970
4급 6등급부터 8등급 까지 소령 국가정보원 전문관(4급 상당 직위)		106,535	19,913	20,796
5급, 5등급, 대위, 국가정보원 전문관		97,129	18,241	19,047
6급, 4등급		88,628	16,568	17,299
7급, 3등급		80,846	15,201	15,872

구분 계급· 직무등급	애틀란타, 휴스턴, 하갓냐, 델러스 (달러)	미국, 국제연합, 뉴욕, 로스앤젤레스, 보스턴, 샌프란시스코, 시애틀, 시카고, 앵커리지 (달러)	호놀룰루 (달러)
14등급	4,748	4,975	5,149
1급,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12·13등급, 소장·준장	4,084	4,279	4,425
23급 고위공무원단 나등급, 9등급부터 11등급까지 대령중령 국가정보원 전문관 (23급 상당 직위)	3,395	3,556	3,674
4급 6등급부터 8등급 까지 소령 국가정보원 전문관(4급 상당 직위)	2,969	3,107	3,210
5급, 5등급, 대위, 국가정보원 전문관	2,735	2,861	2,954
6급, 4등급	2,498	2,615	2,698
7급, 3등급	2,308	2,413	2,488

별표 11 제4호가목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의 2)의 가) 중 “외교부장관”을 “외교부장관 및 국방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2 제1호 지급대상란 제1호 중 “별표 8 및 별표 10”을 “별표 8”로 하고, 같은 표에 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종전의 2호부터 4호를 각각 3호부터 5호로 한다.

2.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0의 봉급 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가. 경장·소방교 이상 : 10호봉 나. 순경·소방사 : 9호봉
---------------------------------------	--

별표 12 제5호나목 중 “6호봉”을 “7호봉”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수당부터 적용한다.

제3조(시·도소방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에 관한 경과조치) 2025년 4월 30일까지의 시·도소방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에 대해서는 제12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2조(특수지근무수당) ①·② (생략)</p> <p>③ 제1항의 특수지근무수당의 지급대상인 지역과 그 등급별 구분은 재외공무원의 경우에는 외교부령으로, 재외공무원 외의 공무원의 경우에는 별표 7의2의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등급 구분기준표에 따라 경찰공무원은 행정안전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u>국립 교육기관 · 교육행정기관 및 교육연구기관 소속 교육공무원</u>은 교육부령으로, <u>교육감이 맡아 주관하는 교육기관 · 교육행정기관 및 교육연구기관 소속 교육공무원과 「소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제1항 및 같은 조 제5항제1호 · 제3호에 따라 특별시장 · 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 · 도지사 ·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임용권을 행사하는 소방공무원(이하 “시·도소방공무원”이라 한다)은 특별</u></p>	<p>제12조(특수지근무수당)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 ----- ----- ----- ----- ----- ----- ----- ----- 「소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제1항 및 같은 조 제5항제1호 · 제3호에 따라 특별시장 · 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 · 도지사 ·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임용권을 행사하는 소방공무원(이하 “시·도소방공무원”이라 한다)은 행정안전부령으로, <u>국립 교육기관 · 교육행정기관 및 교육연구기관 소속 교육공무원</u>은 교육부령으로, <u>교육감이 맡아 주관하는 교육기관 · 교육행정기관 및 교육연구기관 소속 교</u></p>

대상업무를 수행하는 군무원은
군인으로 보아 이에 대한 위험
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의2(업무대행수당) ① 「공
무원임용령」 제57조의4제1항,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30조
의3제1항,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49조제1항, 「소방공무원 임
용령」 제30조의4제1항, 「군인
사법 시행령」 제53조의2제1항,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38
조의2제1항 및 「공무원 재해보
상법 시행령」 제58조제3항에
따라 병가, 출산휴가, 유산휴가,
사산휴가, 육아휴직 또는 공무
상 질병휴직 중인 공무원(병가,
유산휴가 및 사산휴가의 경우에
는 30일 이상 병가 또는 휴가를
사용하는 공무원, 공무상 질병
휴직의 경우에는 6개월 미만의
휴직을 사용하는 공무원으로 한
정한다)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
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
20만원의 업무대행수당을 지급
한다. 다만, 같은 업무를 대행하

-----.

제14조의2(업무대행수당) ① ---
----- 제57조의4제3항,
----- 제30조
의3제2항, -----

제49조제2항, -----
----- 제30조의4제2항, -----
----- 제53조의2제3항,
----- 제38
조의2제3항 -----

----- 육아휴직, 재난이나
재해에 대응하기 위한 출장 또
는 파견 중인 공무원 -----
----- 유산휴가, 사산휴가
및 재난이나 재해에 대응하기
위한 출장 또는 파견의 경우에는
30일 이상 병가 또는 휴가를 사용
하거나 출장 또는 파견되는 공무원,

복무(임용 16년차부터 21년차까
지에 한정한다)하는 항공기 조
종사 중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특수장교]의 수당을 지급한다.

⑥ ~ ⑭ (생략)

수당을 지급하고, 15년을 초과

하여 복무하는 -----

-----.

⑥ ~ ⑭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인사혁신처 성과급여과	
연 락 처	(044) 201 - 8397